

기업구매자금결제이용약정서

(B2B구매자금대출-판매기업용)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20 년 월 일

인감대조

본 인 _____ 인
 주 소 _____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의 기업구매자금결제 판매대금 추심 관련하여 “한국씨티은행B2B 전자결제서비스이용약관” (이하 “서비스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합니다.

제 1 조 (서류의 제출)

- ① 제출서류
 - 1. 환어음(기업구매자금용)
 - 2. 세금계산서 원본
 - 3. 기타 은행이 요청하는 서류
- ② 본인이 MP(Marketplace)(이하 “e-MP”라 한다)를 통한 컴퓨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판매대금 추심의뢰를 하는 경우에 제1항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③ e-MP를 통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e-MP에서 구매기업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은행이 e-MP로부터 전자적 형태로 통보 받는 즉시 제1항의 서류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이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작성 및 추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대행하기로 합니다.
- ④ 본인은 제3항에 따라 추심 의뢰한 구매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구매기업별 세금계산서 정보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나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세금계산서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 1.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정보는 실제거래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 2. 구매기업별 세금계산서 총 매출액은 당해 판매대금의 추심의뢰금액 합계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제 2 조 (추심대금 입금)

- ① 추심대금의 입금계좌는 다음 계좌로 지정합니다.
 (은행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 _____)
- ② 은행은 제1항에 신고한 계좌로 추심대금을 입금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본인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3 조 (추심거절)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판매대금의 추심의뢰를 거부할 수 있으나,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사실을 확인하여 은행이 승인한 경우에는 추심의뢰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 1. 제1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경우
- 2. 당해 구매기업에 대한 구매자금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 3. 당해 구매기업이 은행 여신 원리금 상환채무의 일부라도 지체하는 경우

4. 당해 구매기업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당해 구매기업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6. 당해 구매기업에 대한 구매자금대출이 신용보증기금 담보대출인 경우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당해 구매기업에 대하여 은행의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4 조 (결제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은행은 “서비스이용약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은행의 결제수수료와 e-MP의 중개수수료를 추심대금에서 공제하여 그 차액을 제2조 제1항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정보제공 및 시기)

- ① 본인과 은행은 다음의 정보를 컴퓨터 등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교환하며, 추심 및 판매, 대출실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상호 동의 또는 구매기업의 서면동의 없이 유출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사법기관 및 금융 감독 관련기관의 적법한 요청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제공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구매기업 구매자금대출금에 관한 사항 : 대출한도 및 대출잔액, 연체정보
 2. 구매기업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3. 구매기업의 금융결제원의 부도정보
 4. 기타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 ② 구매기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 시기는 한도조회전문 전송, 매매계약서전문 전송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 전문 전송시에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면책사항)

- ① 은행은 e-MP로부터 전송 받은 매매계약내역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되며, 분쟁은 본인과 e-MP 그리고 구매기업 사이에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 ② 컴퓨터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판매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은행 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그 내용이 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기타사항)

- ① 각 당사자는 신규 구매기업 또는 기존 구매기업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부실화 징후 시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구매기업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부실화 되는 경우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합니다.
- ② 이 약정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의 구매자금 대출제도 관련 규정, 서비스이용약관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이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에 정함이 없으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합니다.

제 8 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 (인)

본인은 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또한, 이 약정서 제5조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함.

본 인 : (인)